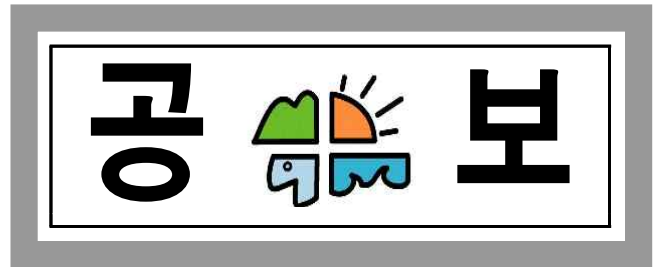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377호 2022년 3월 25일(금)

고 시

- 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3-132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.. 2
- 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220호선)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3
- 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213호선, 소로3-70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... 5

공 고

- 진정민원 신청 건 공문회신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8

입법예고

-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9

속초시 고시 제2022-34호

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3-132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3-132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2년 3월 25일

속 초 시 장

가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: 아래조서 참조

나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: 실음생략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조서

가. 교통 시설

■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조서

구 분	구 모				기 능	연장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 급	류 별	번 호	폭원(m)							
기정	소로	3	132	6	국지 도로	134	중로2-11 청호1323-2대	중로3-12 청호1339-1도	일반 도로	1987. 2. 17. (속고 제87-12호)	선형 변경
변경	소로	3	132	6	국지 도로	134	중로2-11 청호1320-2도	중로3-12 청호1339-5도	일반 도로	1987. 2. 17. (속고 제87-12호)	

■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3-132	소로3-132	◦ 선형변경(연장 및 폭원 변경 없음)	◦ 현황여건에 맞추어 도로선형 일부 조정

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220호선)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220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3월 25일

속 초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속초시 장사동 307-1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220호선)
- 명칭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220호선) 개설공사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속초시장(건설도시과)
- 주소: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

4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시설의 세분	결정규모	금회 사업규모	비고
도로	소로2-220호선	B=8~10m, L=1,057m	B=8~10m, L=364m	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실시계획인가일 ~ 2022. 12. 31.

6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없음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관리자의 성명·주소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 사항	
1	장사동			243	2	속초시					
2	장사동			2,698	402						
3	장사동			10,100	2,601						
4	장사동	304-83		316	95						
5	장사동			932	82						
6	장사동			145	136						
7	장사동			2,735	65		속초시 장사동 242				
8	장사동			11	10						
9	장사동			47	1						
10	장사동			1,223	85		속초시 장사동 232				
11	장사동			58,633	12						
합계				77,083	3,491						

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213호선, 소로3-70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213호선, 소로3-70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였기에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2년 3월 25일

속 초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: 속초시 금호동 473-51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: 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213호선, 소로3-70호선)
- 명칭: 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213호선, 소로3-70호선) 개설공사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및 주소: (주)무궁화신탁 대표 권준명 /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, 207동 2801호(가락동, 헬리오시티)

4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)

시설명	시설의 세분	결정규모	기개설 규모	금회사업 규모	비고
도로	소로2-213호선	L=272m, B=8m	L=56m, B=8m	L=216m, B=8m	무상귀속
	소로3-70호선	L=31m, B=6m	-	L=31m, B=6m	

※ 변경사유: 도로시설물(보도, 옹벽) 및 상수관로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: 실시계획인가일 ~ 2022.06.30.

6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시설규모	면적	비고
도로	소로2-213호선	L=216m, B=8m	2,071m ²	도시계획도로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
	소로3-70호선	L=56m, B=6m		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관리자의 성명·주소

■ 토지조서

번호	소재지	지 번	지목	지 적	편 입 면 적	소 유 자		관 계 인		
							주 소		주 소	소유권 이외권리
1	금호동	473-51	도로	2,914	5	속초시				
2	금호동	473-451	대	6	6	속초시				
3	금호동	473-454	대	59	59	속초시				
4	금호동	473-455	도로	1	1	속초시				
5	금호동	473-139	대	54	54	속초시				
6	금호동	473-169	대	76	76	속초시				
7	금호동	473-383	대	38	38	속초시				
8	금호동	473-384	대	1	1	속초시				
9	금호동	473-385	대	13	13	속초시				
10	금호동	473-386	대	1	1	속초시				
11	금호동	473-387	대	4	4	속초시				
12	금호동	473-388	대	6	6	속초시				
13	금호동	473-389	대	15	15	속초시				
14	금호동	473-390	대	3	3	속초시				
15	금호동	473-391	대	106	106	속초시				
16	금호동	473-393	대	2	2	속초시				
17	금호동	473-394	대	27	27	속초시				
18	금호동	473-395	대	16	16	속초시				
19	금호동	473-396	대	11	11	속초시				
20	금호동	473-397	대	145	145	속초시				
21	금호동	473-401	대	9	9	속초시				
22	금호동	473-402	대	12	12	속초시				
23	금호동	473-404	대	81	81	속초시				
24	금호동	473-405	대	119	119	속초시				
25	금호동	473-456	대	1	1	속초시				
26	금호동	473-408	도로	65	65	속초시				
27	금호동	473-410	도로	28	28	속초시				
28	금호동	473-413	대	40	40	속초시				
29	금호동	473-414	대	240	240	속초시				
30	금호동	479-56	대	192	192	속초시				

번호	소재지	지 번	지목	지 적	편 입 면 적	소 유 자		관 계 인		
							주 소		주 소	소유권 이외권리
31	금호동	479-57	대	71	71	속초시				
32	금호동	482-284	도로	3,573	9	국(국토교통부)				
33	금호동	484-5	도로	218	158	속초시				
34	금호동	484-78	대	10	10	속초시				
35	금호동	484-180	대	29	29	속초시				
36	금호동	484-146	대	6	6	속초시				
37	금호동	484-147	대	48	48	속초시				
38	금호동	484-148	대	20	20	속초시				
39	금호동	484-149	대	42	42	속초시				
40	금호동	484-150	대	63	63	속초시				
41	금호동	484-151	대	1	1	속초시				
42	금호동	484-184	대	79	57	속초시				
43	금호동	484-153	대	4	4	속초시				
44	금호동	484-157	대	39	39	속초시				
45	금호동	484-158	대	45	45	속초시				
46	금호동	484-159	대	10	10	속초시				
47	금호동	484-161	대	72	70	속초시				
48	금호동	484-163	대	13	13	속초시				
합계		48필지		8,799	2,071					

공 시 송 달 공 고

진정민원 신청 건에 대한 회신을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내용 : 진정민원 신청 건 공문회신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

① 2. 공고기간 : 2022. 03. 25. ~ 2022. 04. 08. (14일간)

② 3. 공고장소 :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4. 관련법규 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

5. 공시송달 대상

신청인	송달주소	내용	송달불능 사유
최○○	강원도 속초시 중앙로17번길 11, ○○○동 ○○○○호 (교동, 속초미소지움더뷰아파트)	주택관리업자, 경비·미화용역 재계약건 절차 위반 및 계약서 미공개 관련 진정	폐문부재
김○○	강원도 속초시 청호로 8, ○○○동 ○○○○호 (조양동, 양우내안애오션스카이라파트)	소방안전관리자 급여 지급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진정	폐문부재

6. 공시송달내용

- 귀하께서 신청하신 진정민원 건에 대하여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처리결과의 통지)에 따라 그 결과를 회신하오니,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과 주택팀(☎ 033-639-280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2. 03. 25.

속 초 시 장

「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(조례안 예고) 및 「속초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(조례안 예고)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3월 18일

속 초 시 의 회 의 장 (관인생략)

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: 조례안 참조

2. 기 간 : 2022. 3. 18. ~ 2022. 3. 23.(6일간)

3. 의견제출

가.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·단체,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(대표발의 김명길 의원, 속초시의회 전문위원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 장소 : 24826 / 속초시 중앙로 183, 속초시의회
김명길 의원(☎ 033-639-1636, FAX 033-639-2634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이메일(500cc@korea.kr),
시의회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(의견서 예시)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 례 명 :

☐ 제 출 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☐ 제출의견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건	비 고
	찬 성	반 대		

☐ 기타 참고사항

○

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(김명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변 호	
--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2. 3. .

발 의 자 : 김명길 의원 외 인

1. 제안이유

속초시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17에 따라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,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설치 등 (안 제3조)

다. 위탁운영 (안 제4조)

라. 이용대상 (안 제5조)

마.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(안 제6조 ~ 제7조)

바. 감면 제한 및 감면 이용료의 보전 (안 제8조 ~ 제9조)

사. 시설 이용의 제한 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－ 「모자보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기 타

1) 집행부 의견청취

2) 조례안 예고

3)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17에 따라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,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산모”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.
2. “신생아”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.
3. “공공산후조리원”이란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등)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
2.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
3. 산모에 대한 교육·프로그램 등의 운영
4. 공공산후조리원 및 그 부속 시설의 유지 및 관리
5.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4조(위탁 운영)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 2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
 3.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
 4.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
-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5조(이용대상)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1.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
2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
6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
7.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
8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9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10.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
11.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

제6조(이용료)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1일 13만원 이내 범위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이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제5조제1호인 경우 : 100분의 50 이내 범위
2. 속초시민 중 제5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: 100분의 70 이내 범위
3. 산후조리원이 없는 설악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 : 100분의 10 이내 범위

② 시장은 제1항과는 별개로 속초시 공공분만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에 대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,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이용료의 감면 제한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감면 이용료의 보전)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제7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청구할 경우 보전할 수 있다.

제10조(시설 이용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. 다만,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,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.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
3.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친 사람
4.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모자보건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, 모자동실 설치·운영,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모자보건법 시행령

제17조의6(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)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.

■ 모자보건법 시행령 [별표 2의2]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
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(제17조의6 관련)

1. 설치기준

- 가. 임신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, 영유아 침대,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신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(母子同室)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.
- 나.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, 영유아실 정원은 임신부실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- 다. 그 밖에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2. 운영기준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가. 감염 및 안전관리

- 1)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- 가) 감염 예방, 감염 발생 시 대응, 교육·훈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계획 수립

- 나) 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·평가 및 개선활동

- 다)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·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

- 2)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- 가) 화재 예방, 화재 발생 시 대응, 안전교육·훈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

- 나) 소화시설, 대피로,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·평가 및 개선활동

- 다)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임신부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·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

나. 모자동실 운영 등

- 1) 임신부실은 임신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.

- 2) 산후조리원 입소 전 임신부에게 임신부실을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, 모자동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

한다.

- 3) 영유아실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.

다.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

- 1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2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,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가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- 나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- 다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- 라)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
 - 마)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
 - 바)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 - 사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 - 아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 - 자)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

라. 행정적·재정적 지원

조례·규칙의 제정, 관할 보건소·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마. 실태조사 및 평가

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3. 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

- 가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입소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다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나.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건강가정기본법

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5. 직장과 가정의 양립
6. 음란물·유홍가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·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 가정, 공동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